



제429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호자의 요청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54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보호자의 요청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2
2. 개정안 부칙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 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8. 8.

3. 회 부 일 : 2024. 8.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학부모는 검사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보호자의 요청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생략) <u><신설></u>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u>보호자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이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u>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u>내용 및 실시</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내용·실시 및 공개 범위</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에 활용되는데,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생은 학교 및 필요시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제공받게 됨²⁾.

□ 한편,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³⁾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 학부모(보호자)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검사 결과 등을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진단·지원 과정에서 학부모(보호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1)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2022.10. 교육부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였음.

□ 또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⁴⁾」에 대한 판결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유를 통해 학생, 학부모 및 학교가 모두 연계하여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이 적시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하였음⁵⁾.

□ 현행법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실시를 위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등을 학생 및 학부모

4) 2023년 서울시의회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동 조례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해당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해당 조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3추5054(2025.05.15.)]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위 조례안 규정의 취지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도 증진 등에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위 조례안 규정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조례안 규정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 공유를 통해 학생, 학부모 및 학교가 모두 연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이 적시에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에게 안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서 보호자의 역할은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보호자에게 진단검사의 결과 통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목적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⁶⁾, 기초학력진단검사 후 학생의 보호자가 진단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신속히 제공한다면 “학습지원교육”이 적시에 제공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보호자의 알권리도 보장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생의 보호자가 요청할 시, 검사 결과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가정과 연계한 적절한 기초학력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수용 의견이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범위의 기본 원칙과 예외사항은 법률에 정하고, 기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 검토 및 불수용 의견이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⁷⁾.

6)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7)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통지 외에는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8)」이 계류되어 있는바,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의견]

<시·도교육청>

- (인천) 진단검사 결과는 이미 필요에 따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 불필요
 -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
- (대전) 현행 개정안의 “학생의 보호자”라는 표현은 특정 학생을 지칭하지 않아, 학부모회 등 단체 또는 다수의 보호자가 연합하여 학교의 진단검사 결과로 학교 수준을 파악하려는 경우 제한하기 어려우며, 이는 학교 간 순위 매기기, 경쟁 등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 해당 학생의 보호자만이 그 범위 안에서 결과를 열람·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 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세종)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도구가 다를 수 있으며, 결과를 공개할 경우 지역별 선호·비선호 리스트가 작성될 수 있어 학교 및 지역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경남) 신설 항(제2항)에서 공개 범위를 ‘공개할 요청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정하고 있어 제3항에서 ‘공개 범위’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하고, 제2조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안 부칙 제1조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소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부칙 제2조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7조제2항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실시한 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결과의 공개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경우에는

결과의 공개 요청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